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 진행

-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운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향서 작성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캠페인 본격 시동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지자체 협력기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교육 이후, 작성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소속 상담사에 의해 1:1 상담과 작성이 진행되었다.

이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또한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7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같이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우수지역인 전북도의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북도민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8.2.시행)』에 근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힘써왔다.
- 2024년 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6.2%, 65세 이상 인구 20.0% (다섯 명 중 한 명)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지역별 평균(6.2%)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전수(전북도 100%, 전국 평균 70%)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좌)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우)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 진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당 부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사업관리부	책 임 자	본 부 장	조정숙 (02-778-7505)
		담 당 자	부 장	문용준 (02-778-7001)

□ 제도 개요

-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6.2월 제정, '18.2월 시행)
- **(사업수행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
- **(제도참여기관)**
 -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468개소**('24. 12월말)
 - * 자체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참여 위해 13개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760개소**('24. 12월말)
 - *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주요 용어>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의사 2인의 임종과정 판단 + 환자 의사 확인(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가족 2인 진술) * 환자 의사 확인 불가 시 ④가족 전원합의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 **(말기환자)**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통상 3~6개월**)
- ☞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통상 2~3일**)

참고2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운영 현황('24. 12월말)

□ 제도 참여기관

- (의료기관) 총 468개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또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5인 이내로 구성·설치되어 제도와 관련 심의, 상담, 교육 등 수행

종별	구분	대상기관 수	설치·등록기관 수	등록률(%)
상급종합병원		47	47	100.0
종합병원		331	217	65.6
병원		1,410	47	3.3
요양병원		1,359	149	11.0
합계		3,147	460	14.6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7개 기관 등록

- (등록기관) 총 760개소 지정

구분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계
기관수	175	204	35	2(239*)	105	521(760*)

* 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출장소 포함

□ 제도 운영 현황

